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06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서미화·강준현·박해철

송재봉ㆍ이병진ㆍ이수진

임호선 · 김예지 · 김재원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 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제82조).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마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2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	제82조(안마사) ①
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u>시·도지</u>	<u>보건복지</u>
<u>사</u> 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	<u> 부장관</u>
다.	<u>.</u>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	1
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	
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u>제4항</u> 에 따른 안마	<u>제5항</u>
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	
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국가나</u>	④ <u>국가,</u>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말한다)이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	
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	

다.	
	<u>.</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